

#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 증개정령(안) 입법예고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법령안입법 예고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4. 11. 5

교통부장관

## 1. 개정취지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해양오염방지협약(73/78MARPOL) 부속서 I(기름오염방지)의 개정사항을 국내 수용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가. 해양오염방지협약의 개정에 따라 선박으로부터 항행중 기름배출기준을 종전에 100ppm미만을 15ppm이하로 상향조정하고 기존 유수분리장치는 1998년 7월 6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나. 방제자재등을 갖추어야 하는 우리나라 선박을 종전에는 추진기관이 있는 총톤수 100톤이상 유조선과 총톤수 1만톤 이상 유조선의 선박이었으나 총톤수 100톤이상 유조부선에도 방제자재등을 갖추도록 하여 오염사고 발생시 응급방제능력을 확보하도록 함.

다. 종전에는 공동부령에서 지정하는 해양오염방지 설비만 형식승인대상이었으나 해운항만청장이

별도로 고시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국제협약개정사항을 신속히 수용하도록 함.

라. 종전에 고시로 시행하던 1993년 7월 6일이후 건조되는 재화중량톤수 600톤이상 신조유조선의 이중선체구조기준을 이 규칙에 수용하고 1993년 7월 6일 이전 건조된 현존 유조선중 재화중량톤수 2만톤이상 유조선 및 3만톤이상 석유제품 유조선은 당해선박의 건조시기에 따라 선령 25년 또는 30년이 될 때까지 이중선체구조를 갖추도록 함.

## 3. 의견제출

이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4년 11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교통부장관(참조 : 수송정책실 조정2과장, 전화 504-902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